

교육기관종합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가입자격

- 교육기관 경영자 및 업무수행자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물건(재물)의 특성 및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 또는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 이 보험의 배상책임손해조항은 교육시설에서 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된 보험사고를 담보합니다. 신체손해조항은 피보험자의 교육기관에 관련된 생활 중에 발생한 상해로 기인한 상해 및 후유장해를 담보합니다.
- 이 상품의 보험기간(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 보험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보험료분납 특별약관에 따라 분할 납입이 가능합니다.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 보험이므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지급사유

- 이 상품은 재산손해조항, 배상책임손해조항, 신체손해조항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장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장명		보험금 지급사유
재산손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벼락 포함)로 발생한 손해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글그림, 골동품, 원고, 설계서 등의 목적물에 대해 계약 체결시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중의 보험가액으로 함.
배상책임손해		교육시설에서 교육기관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구내치료비	교육기관 구내에서 학생이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보상(180일 한도)
	치료비	학생이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보상(180일 한도)
신체손해		피교육생의 교육기관 생활 중 상해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해
	교육기관 교직원 상해	교직원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재산손해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상합니다.

$$\text{보험금}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보험금에서 제외합니다.

○ 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신체손해 보험금

-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로 사망시 사망보험금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지급률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부터 해당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손해담보조항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예시]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화재 시 발생한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파열 또는 폭발 손해
- 동결로 인한 수도관의 파열
-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물질과 그에 의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방사능 오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 배상책임담보조항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예시]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교육기관 교직원을 포함합니다)가 교육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 교육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 작업을 포함)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교육시설을 타인의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그 타인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교육기관 교직원이나 교육기관 피교육생들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 신체손해조항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예시]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회사가 대표적으로 정하는 가입조건에 따른 보험료 예시

- 가입조건 : 보험기간 1년, 학교(건물구조급수 1급), 초등학교, 피보험자 30명

(단위: 원)

구분	담보	가입금액/보상한도	영업보험료(계)
기본 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	1억	144,570
	교육기관 화재손해	10억	
선택 계약	배상책임(대인)	1천만(인당/사고당 보상한도)	
	배상책임(대물)	2백만(사고당 보상한도)	

※ 상기 보험료는 요율 변동 및 보험가입조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5. 기타 알아 두실 사항

Q1) 주요용어해설

- A1) 상해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의 상해
- A2) 교육시설 :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 A3) 교육업무 :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
- A4) 교육기관「생활 중」:
 - 1. 교육기관수업 중(정규의 교육활동 외에 기타 교육기관이 행하는 모든 특별활동을 말합니다)
 - 2. 교육기관수업 및 기타 통상적인 교육기관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
 - 3. 특별교육행사 참가 중(교육위원회 등 유관단체가 행하는 특별교육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교육기관 교직원의 인솔이 있어야 합니다)
 - 4.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 하교 중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